

****참여전,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13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행사개요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제13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는 '국내 HRD 관계자에게 '국내의 HRD와 HRM 최신동향, 선진기업, 우수사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질 대란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향상 확산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듣는 서로 다른 28개의 강연이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요

명 사	제13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HRD CONFERENCE 2019)
주 제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일 세	2019. 9. 9(월) ~ 10(화)
관 소	코엑스 그랜드볼룸
참 가 대 상	기업·대학·정부·공공기관의 경영진, 인적자원개발 관계자 및 관련분야 학생, 일반인
주 체	 고용노동부
주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료출처: : 인적자원개발컨퍼런스(<http://conference.hrd-festival.org/>)

□ 2019 일본채용박람회



일본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에게 꼭 필요한 무료 컨설팅 제공!

2019. 9. 9(월) ~ 10(화)

참가대상 |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
장소 | 코엑스 3층 300~328호, 4층 401~403호

참가기업 합동 설명회

- 참가대상 : 설명회 사전신청자에 한해 참가가능
 - 일시 : 2019. 09. 9(월) 10:00 ~ 16:00
 - 장소 : 코엑스 4층, 401 ~ 403호
 - 사전신청 마감일 : 9월 5일(목) 23:59 까지
- 기업별 30분 단위, 3개 분야별 기업설명회 동시 진행
※ 합동 설명회 참가자는 일부 기업에 한해 현장 입사지원 가능

개별 면접회

- 참가대상 : 입사지원자 중 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 진행
 - 일시 : 2019. 9. 9(월) ~ 10(화) 9:00 ~ 18:00
 - 장소 : 코엑스 3층, 300~328호
 - 입사지원 마감일 : 8월 25일(일) 23:59 까지
- ※ 면접회 참가자도 설명회 참가를 위해서는 사전신청 필수

일본 취업 상담 및 맞춤형 기업 매칭 서비스

▶ 신청방법 : 박람회 홈페이지 > 구직자 참가안내 > 기업매칭 컨설팅 클릭!!

입사지원 및 합동 설명회 참가신청 | www.kitajobfair.net/bridgerskorea2019

문의 | 한국무역협회 일자리지원센터 Tel : 02-6000-7136~7 E-mail : kmovkita@kita.net



* 자료출처: http://www.kitajobfair.net/bridgerskorea2019/sub/sub01_01.do

□ 2019 G밸리우수기업채용박람회



일시	2019년 9월 26일 (목) 14:00~17:00		
장소	G밸리컨벤션 1F (구로구 디지털로 300)		
참가대상	취업을 원하는 누구나		
행사구성	현장면접 및 기타 부대행사		
주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주관	구로구, 금천구,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 서울지방병무청,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사)벤처기업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신청기간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본부 경영지원팀	개인신청기간	행사당일 참석
문의처	070-8895-7343	FAX	--
담당자		E-MAIL	jaguar@kicox.or.kr
사이트(출처)	http://www.guro.go.kr/www/ntc/NR_list.do		

취업박람회 행사 참여전 개최여부를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잡815

* 자료출처 : http://www.guro.go.kr/www/ntc/NR_list.do

□ 2019 청년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



○ 행사개요

행사명	2019 청년 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
일시	2019년 9월 19일(목) 10~17시
장소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서울) 오시는길
참가대상	-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누구나 - 이공계 미취업자 누구나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양대학교 LINC+ KB 국민은행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KAIST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기술인재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 INNOBIZ 이노비즈협회 정년재단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코스닥협회

* 자료출처 : <http://rndjob.jobkorea.co.kr/Home/Main>

'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25.8조원, 전년 대비 4.5조원 증가

✓ 고용서비스 ·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촉촉하고 든든한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

- '20년 일자리예산은 '19년 21.2조원 대비 4.5조원 증가한 25.8조원(24개 부처)
 - 대외경제 악화 등 **고용상황 불확실성의 증가**에 적극 대응
 - **민간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중심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취업취약계층** 대상 **고용서비스 확대**
- **일자리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효율화 추진 및 효과성 증대**
 - 저성과·중복 사업 **폐지**(4개) 및 유사·중복 사업 **통합**(4개 → 2개)
 - 저성과 사업(성과평가지 D등급) 예산 **감액**
 - 예산이 꼭 필요한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에게 제대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사업** 등 **제도 개선** 병행
- **성과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 「**직접일자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부진 사업에 '**일몰제**' 도입, 신규 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지속여부 결정
 - 핵심지표와 '**최소 성과기준**'을 설정하고, 미달성 시 **사업을 폐지**하거나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 추진

I.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총괄

□ '20년 일자리 예산(안)은 금년(21.2조원*, 본예산 기준) 대비 4.5조원 (21.3%)이 늘어난 25.8조원이며, 168개 사업이다.

* 일자리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바우처 서비스(예: 돌봄)는 일자리사업 관리대상에서 제외

<유형별 일자리사업 예산>

(단위: 억원, %)

대상	총 예산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직접일자리	창업지원	실업소득
'19년	212,374	9,867	19,610	57,883	20,779	25,097	79,139
'20년	257,697	12,133	22,917	66,166	29,241	23,631	103,609

- 정부 총지출(513.5조원)에서 일자리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5.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8년 4.2% → '19년 4.5% → '20년 5.0%)
-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은 ①일부 고용지표의 개선 추세에도, 국민의 체감도를 더욱 높일 필요성, ②대외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내년도 고용상황 불확실성의 증가,
 - ③급속한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확대 편성하였다.
- 한편, 이번 정부 들어 성과평가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개편 및 예산배분 체계를 마련하였고,
 - '20년 예산에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등 일자리사업의 효율성도 높였다.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20년 일자리사업 정비 주요내용

■ 저성과·중복 사업 폐지(4개) 및 유사·중복 사업 통합(4개 → 2개)

- * 관광산업일자리활성화및단체지원(관광통역안내사양성)(문체부), 건설근로자취업지원(고용센터)(고용부) 등 폐지
- * 장년고용안정지원금(근로시간단축)(고용부) 및 시간선택제(전환)(고용부) → 워라벨일자리장려금사업으로 통합 등

■ 저성과사업(D등급) 예산 감액

- * 학교예술강사 지원(문체부), 데이터전문인력양성(과기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국토부),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해수부) 등

■ 성과평가에 따른 제도 개선 예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기업당 지원한도 축소, 최소 고용유지기간 설정 등

II. 중점 투자 방향: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및 고용안전망 강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 취업취약계층 등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현장수요 맞춤형·신기술분야 훈련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 확대 / 청년·여성·신중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 노인·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직접일자리** 지원 확대

1 고용서비스 기반 확충

□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을 금년 대비 23% 증가한 1조 2,133억원으로 확대하여 취업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 해소'를 지원한다.

① '20년 하반기,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한다.

-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 정비하였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0년] 2,771억원, 20만명

☞ (지원대상) '취업취약계층'으로서 ①구직의사·능력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②연령 18~64세 이하이면서, ③소득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청년은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

(지원내용) 취업지원프로그램(1:1 밀착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 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 구직촉진수당(중위소득 50%(청년 120%)이하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9년] 3,710억원, 22만7천명 → ['20년] 2,447억원, 15만명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년] 1,582억원, 8만명 → ['20.上] 1,642억원, 5만명

② 또한,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 직업안정기관운영: ['19년] 309억원 → ['20년] 407억원

☞ 중형 고용복지+센터(24곳), 심리안정·집단상담 프로그램실(24개소)·민원인 대기시간 감소 위한 키오스크(30곳)·온라인 실업인정공간(88곳) 확충 등

- ③ 아울러, 기업·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 일터혁신컨설팅지원: [‘19년] 142억원 → [‘20년] 236억원

② 직업훈련 지원 확대

□ 기업과 산업계의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 및 ‘신기술분야’ 지원 대폭 강화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 예산을 금년 대비 16.7% 증가한 2조 2,917억원으로 확대했다.

- ①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하여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고품질 훈련을 지원하고, 업종·산업별 협·단체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청년 구직자·재직자 중심 훈련을 지원한다.

[‘20년, 신규] 1,194억원

- ②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하여 산업·기업 맞춤형 전문기술 및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한다.

*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19년] 280억원, 1,400명 → [‘20년] 340억원, 1,700명

*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19년] 119억원, 1,540명 → [‘20년] 175억원, 1,790명

* 폴리텍하이테크과정: [‘19년] 39억원, 775명 → [‘20년] 48억원, 960명

- ③ 그간 분리 운영하였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하여 ^(가칭)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면서,

- 중장기적 역량향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및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 평생내일배움카드: [‘19년] 7,822억원 → [‘20년] 8,787억원

- ☞ 1) 카드 발급대상에서 구직자·재직자 구분을 없애고 특고, 자영업자 훈련 참여 확대
- 2) 300~500만원 지원한도(기존 200~300만원), 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
- 3) 자부담률 평균 30~40% 수준(기존 구직자 평균 25%, 재직자 0~20%)

③ 대상별 ·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① (청년) 취업률 제고 및 장기근속 지원

- 청년고용이 어려운 상황('19.上 청년실업률 10.2%)에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20. 시행)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19.8.8 기발표) 주요 개편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19년] 9,971억원, 25만명(신규10) → ['20년] 1조 2,820억원, 35만명(신규14)
 -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하면서 지원인원 확대
 - 장기근속을 위해 조기 이직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기준 개편: 6개월 → 12개월 내 이직
 - 대·중소기업 소득 격차 완화, 청년취업촉진 목적에 맞게 임금상한 기준 조정 (월 500만원 → 350만원), 중견기업은 일정 규모 이하만 지원(매출액 3,000억원 미만)
 - 청년·기업의 공제 가입 및 계속근로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탐색 기간 연장 (가입 신청기간: 취업 후 3개월 → 6개월 이내)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9년] 8,907억원(추경포함), 20만명(신규11) → ['20년] 9,919억원, 29만명(신규9)
 -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 한도 축소: 90명 → 30명
 - 정규직 채용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설정
 -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30~99인 미만 기업은 2번째 채용,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채용인원부터 지원)

② (여성) 일·육아 병행 일자리 환경 조성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육아근로시간단축 지원 확대 등 모성보호육아지원을 강화한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주요 개편내용('19.10.1~)

- 모성보호육아지원: ['19년] 1조 4,553억원 → ['20년] 1조 5,432억원
 - 육아근로시간 단축 최대 1년 → 2년으로 확대하고, 日 첫 1시간 단축분의 지원금액을 상향(통상임금의 80% → 100%)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

③ (신중년) 고용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

-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년, 신규] 296억원, 1.1만명

☞ (지원요건) ①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② 정년에 도달한 재직노동자를 ③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수준)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일정기간 지원

-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및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19년] 218억원, 1.25만명 → ['20년] 513억원, 2만명

④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및 고용안정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장애인직업능력개발: ['19년] 616억원 → ['20년] 863억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6개소>

* 장애인고용장려금: ['19년] 2,106억원, 55.4만명 → ['20년] 2,297억원, 55.7만명

☞ 중증여성 +20만원, 중증남성+10만원, 경증여성 +5만원

-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 근속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규모도 확대한다.

* 근로지원인: ['19] 555억, 3천명 → ['20] 948억, 5천명

⑤ (지역) 고용위기 발생 전 선제적 대응

-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 사업을 신설,

- 지역 단위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주요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고용위기선제대응패키지: ['20년, 신설] 650억원

☞ 취업자수 급감대규모 구조조정 등 고용위기 우려 지역 대상 연간 30~200억원(최대 5년) 지원

④ 고용안전망 확충

① 구직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 지급기간을 30일 연장(90~240일 → 120~270일)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19년 집행 추이를 감안하여 확대 편성하였다.

* 구직급여: ['19년] 7조 1,828억원(실 집행기준 8조 2,596억원 예상), 121만명 → ['20년] 9조 5,158억원, 137만명

☞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 → 60%, (지급기간) 90~240일 → 120~270일, 30세 미만 청년 구직자 지급기간 최대 60일 증가,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수급 기회 확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 실업크레딧지원: ['19년] 650억원, 34.2만명 → ['20년] 836억원, 46.5만명

② 고용보험 가입인원 증가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사중손실을 고려하여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40→30%)한다.

* 사회보험료사각지대해소: ['19년] 1조 3,419억원, 237만명 → ['20년] 1조 1,629억원, 278만명

⑤ 취업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대

□ 취업취약계층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여 일을 통한 소득 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내년에는 4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여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한다.

※ 65세 이상 인구 증감(전년대비, 천명): ('16) 233 ('17) 304 ('18) 306 ('19추계) 313 ('20추계) 440
15~64세 인구 증감(전년대비, 천명): ('16) 134 ('17) 21 ('18) 73 ('19추계) △ 55 ('20추계) △ 232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9년] 8,130억원 61만명(추경 64만명) → ['20년] 1조 1,955억원 74만명

②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 지원과 '민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한다.

* 자활근로사업: ['19년] 3,897억원, 4.8만명 → ['20년] 5,078억원, 5.8만명

* 장애인일자리지원: ['19년] 1,208억원, 19,852명 → ['20년] 1,415억원, 22,352명

⑥ 성장단계별 창업 지원 확대

① 창업 초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기업가를 양성한다.

* 창업성공패키지: [19년] 922억원, 920팀 → [20년] 1,041억원, 1,085팀

* 청년등사회적기업가양성: [19년] 281억원, 800팀 → [20년] 351억원, 1,000팀

② 예비, 초기(~3년), 도약(3~7년)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률과 생존율을 높인다.

* 창업사업화지원: [19년] 2,950억원, 3,388개소 → [20년] 4,008억원, 3,972개소

III. 성과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관리 강화

□ 정부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성과평가와 현장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5월에는 「2019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해, 「직접일자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부진 사업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또한, 취업취약계층 참여 확대, 반복참여 제한, 참여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일반 노동시장 취업촉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상대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핵심 지표와 ‘최소 달성치’를 설정하고, 미달성 시 사업이 폐지되거나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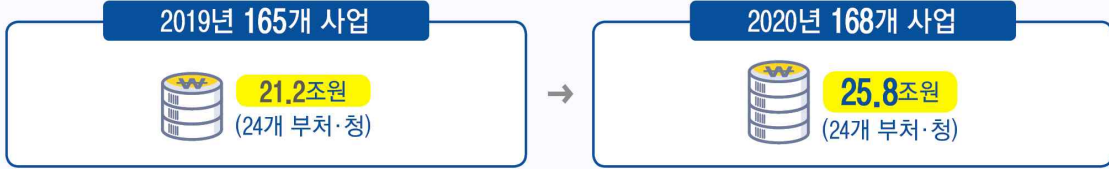
□ 정부는 국민들이 일자리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사업별 상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6]의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한눈에 보는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예산규모



유형별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안전망 (실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취약계층 고용서비스 강화 공공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수요(산업·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취업지원제도: 20만명 중형 고용복지+센터 24개소 추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수요 맞춤형 훈련 신규 4,800명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1,400 → 1,700명 내일배움카드 48.2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7만명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지급일 30일 연장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청년	여성	신중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추가고용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만명 (신규 11) → 29만명 (신규 9) 기업당 지원한도 90 → 30명 축소 최소고용유지기간 1 → 6개월 청년내일채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만명 (신규 10) → 35만명 (신규 14) 3년형 → 2년형으로 통합 임금상한 기준 500 → 350만원 3년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기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성보호 육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 → 2년 1시간 단축분 지원금액 인상(통상임금 80 → 100%)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유급 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신규 1.1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정년 연장, 정년이후 재고용 제도 등 도입 사업주 (지원수준) 1인당 월 30만원 신중년 경력형·사회공헌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5만명 → 2만명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훈련센터 6개소 신규 설립 장애인 고용장려금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여성</th> <th>남성</th> </tr> </thead> <tbody> <tr> <td>중증</td> <td>60 → 80만원</td> <td>50 → 60만원</td> </tr> <tr> <td>경증</td> <td>40 → 45만원</td> <td>30만원</td> </tr> </tbody> </table> 			여성	남성	중증	60 → 80만원	50 → 60만원	경증	40 → 45만원	30만원
	여성	남성									
중증	60 → 80만원	50 → 60만원									
경증	40 → 45만원	30만원									

- ❖ '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은 전년대비 21.3% 증가한 25조 7,697억원
- ❖ 24개 부처에서 168개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며, 부처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19.7조, 76.4%), 중기부(2.6조, 10.2%), 복지부(2.3조, 8.8%) 순
- ❖ 일자리사업 유형별 예산액은 실업소득 유지(10.4조원, 40.2%), 고용장려금(6.6조원, 25.7%)이 가장 크고, 고용서비스(1.2조원, 4.7%)가 가장 적음

□ '20년 일자리 예산(안)은 금년(21.2조원*, 본예산 기준) 대비 4.5조원(21.3%)이 늘어난 25.8조원으로, 168개 사업을 24개 부처·청에서 운영

* 일자리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바우처 서비스(예: 돌봄)는 일자리사업 관리대상에서 제외

○ 정부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일자리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매년 증가

* 규모 및 총지출 내 비중 ('16) 14조 7,632억(3.8%) → ('17) 15조 9,452억(4.0%) → ('18) 18조 181억(4.2%) → ('19) 21조 2,374억(4.5%) → ('20) 25조 7,697억(5.0%)

<중앙부처 일자리 예산 추이(억원,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안)
일자리 예산	147,632	159,452	180,181	212,374	257,697
전년대비 증가율	(13.4)	(8.0)	(13.0)	(17.9)	(21.3)
총지출 대비 일자리예산	3.8 [386.3조]	4.0 [400.5조]	4.2 [428.5조]	4.5 [470.5조]	5.0 [513.5조]

※ 일자리 예산은 바우처 사업을 제외한 금액임

<'20년 일자리 예산(안) 유형별 규모(억원, %)>

유형	'19년	'20년안	비고
【일자리 사업】	212,374	257,697	4.5조원, 21.3% 증가
1. 고용서비스	9,867	12,133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0.3조원)
2. 직업훈련	19,610	22,917	- 평생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0.8→0.9조원)
3. 고용장려금	57,883	66,166	-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29만명)
4. 직접일자리	20,779	29,241	- 노인일자리 확대 61→74만명(+13만명)
5. 창업지원	25,097	23,631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4만명)
6. 실업소득 유지·지원	79,139	103,609	- 구직급여(7.2→9.5조)

참고 3

'20년 부처별 일자리사업 예산(안)

- (예산액) 고용부(19.7조, 76.4%), 중기부(2.6조, 10.2%), 복지부(2.3조, 8.8%) 순
- 상위 3개 부처의 일자리 예산이 전체의 95.4% 차지(24.6조원)
- (사업 수) 고용부(69) · 중기부(14) · 복지부(9)가 92개로 54.8%를 차지

<부처별 일자리예산 현황>

(단위: 개, 억원, %)

순위	부처	사업수	총계	비중	직접 일자리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고용 장려금	창업 지원	실업 소득
계		168	257,697	100	29,241	22,917	12,133	66,166	23,631	103,609
1	고용부	69	196,802	76.4	575	20,232	11,147	61,142	382	103,324
2	중기부	14	26,265	10.2	0	403	100	3,399	22,362	0
3	복지부	9	22,801	8.8	22,248	0	268	0	0	285
4	행안부	5	2,980	1.2	2,606	0	0	0	374	0
5	교육부	6	2,961	1.1	0	1,228	18	1,566	150	0
6	문체부	11	1,429	0.6	1,286	39	0	0	104	0
7	산림청	5	1,310	0.5	1,310	0	0	0	0	0
8	과기부	9	662	0.3	69	593	0	0	0	0
9	여가부	4	606	0.2	148	225	233	0	0	0
10	경찰청	1	533	0.2	533	0	0	0	0	0
11	환경부	3	396	0.2	396	0	0	0	0	0
12	농림부	4	210	0.1	40	0	30	0	140	0
13	산업부	6	154	0.1	0	129	0	20	5	0
14	국방부	1	153	0.1	0	0	153	0	0	0
15	법무부	3	127	0.0	0	45	82	0	0	0
16	보훈처	2	90	0.0	0	0	90	0	0	0
17	해수부	6	81	0.0	3	9	3	0	66	0
18	특허청	3	54	0.0	11	0	7	0	37	0
19	국토부	2	26	0.0	0	0	2	24	0	0
20	농진청	1	16	0.0	16	0	0	0	0	0
21	통일부	1	15	0.0	0	0	0	15	0	0
22	기상청	1	12	0.0	0	0	0	0	12	0
23	식약처	1	9	0.0	0	9	0	0	0	0
24	방사청	1	6	0.0	0	6	0	0	0	0

<'20년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예산(안)>

-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예산은 19조 6,802억원으로, '19년 대비 22.7%(+3조 6,388억원) 증가
 - 직접일자리는 575억원으로 '19년 대비 319억원(124.6%) 증가, 직업훈련은 2조 232억원으로 '19년 대비 2,929억원(16.9%) 증가, 고용서비스는 1조 1,147억원으로 '19년 대비 2,158억원(24.0%) 증가
 - [직접일자리]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218억원 → 513억원, +295억원)
 - [직업훈련]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1,083억원 → 1,791억원, +708억원) 등
 - [고용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2,771억원)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157억원 → 230억원, +73억원) 등
 - 고용장려금은 6조 1,142억원으로 '19년 대비 6,490억원(11.9%) 증가, 실업소득지원은 10조 3,324억원으로 '19년 대비 2조 4,407억원(30.9%) 증가
 - [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9,971억원 → 12,820억원, +2,849억원)
고용창출장려금(8,722억원 → 1조 1,661억원 +2,939억원)
 - [실업소득지원] 구직급여(7조 1,828억원 → 9조 5,158, +2조 3,330억원)

<고용노동부 '20년 일자리 사업 예산안(억원, %)>

구 분	'19년 예산 (A)	'20년 예산안 (B)	'19년 대비 (B-A)	%
합 계	160,414	196,802	36,388	22.7
■ 고용서비스	8,989	11,147	2,158	24.0
■ 직업훈련	17,303	20,232	2,929	16.9
■ 고용장려금	54,652	61,142	6,490	11.9
■ 직접일자리	256	575	319	124.6
■ 창업지원	297	382	85	28.6
■ 실업소득유지지원	78,917	103,324	24,407	30.9

1

청년내일채움공제 ('20년 가입자부터 적용)

① 청년공제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하면서 지원인원을 확대('19년 10만명 → '20년 14만명)

⇒ ('19년) 신규가입 10만명(2년형 6만 + 3년형 4만), 9,971억원 → ('20년) 신규가입 14만명(2년형), 12,820억원

②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해지환급금* 지급 기준 변경

⇒ ('19년) 6개월 내 이직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 (20년) 12개월 내 이직시 해지환급금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개선

* 6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 시: 그 동안의 정부지원금(2년형 75, 3년형 150만원) 미지급,
6개월 이상 근무 후 이직 시: 정부지원금 일부 지급(2년형 50%, 3년형 30%),
기업적립금은 기간과 관계 없이 전액 미지급

③ 청년·기업의 공제가입 및 계속근로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탐색 기간(가입신청 기간) 연장

⇒ ('19년) 취업 후 3개월 이내 → (20년) 6개월 이내 가입 신청

④ 대·중소기업 소득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제 가입이 가능한 임금상한을 하향

⇒ ('19년) 월 급여총액* 500만원 이하 → (20년) 350만원 이하

* 기본급, 연장근로 수당 및 상여금 등 포함, 1년 유지 조건

⑤ 청년 취업 촉진 목적에 맞게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만 지원

⇒ ('19년) 중견기업 가입 가능 → (20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가입 가능

* 중견기업 3년평균 매출액 3천억원 기준적용 예: 중견기업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지원(산업부), 「조세특례제한법」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업 기준 등

①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업당 지원한도 축소

⇒ (기존) 기업 당 최대 90명 → (개선) 기업 당 최대 30명

②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최소 고용유지 기간 6개월 설정

⇒ (기존) 첫 번째 월급 지급시 지원금 신청 가능 → (개선) 6개월 고용 유지 후 지원금 신청 가능

* 현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여부를 근로계약서로 판단하므로, 채용 직후에는 정규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6개월 이상 근무 후 신청

* 식당, 편의점 등에서 단기간 아르바이트 활용 시에도 정규직으로 신청하는 사례 등

③ 장려금의 사증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규모별로 최초 지원 인원 차등 적용

* 장려금 지원 없이도 통상 증가하는 수준의 인원만큼은 지원을 배제

⇒ (기존) 기업규모가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 지원 → (개선) 기업규모가 30~99인 경우는 2 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지원

구분	현행				⇒	개선			
	1	2	3	4		1	2	3	4
고용									
30인 미만	900	1,800	2,700	3,600		900	1,800	2,700	3,600
30~99인	x	1,800	2,700	3,600		x	900	1,800	2,700
100인 이상	x	x	2,700	3,600		x	x	900	1,800

④ 장려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신규 성립사업장 당해연도 지원한도 설정

⇒ (기존) 신규성립장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 모두 지원 → (개선) 신규성립사업장이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당해연도 지원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의의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참고]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면서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도 없는 자),
-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인

2 유형별 개요

① 직접일자리사업

- ①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② 한시적 일자리 및 ③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다만, 은퇴인력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실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도 직접일자리사업에 포함

* 예) 중·장년층 대상 사회공헌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등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 구직자 및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실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훈련기관·기업·대학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사업

③ 고용서비스

- 구직자(재직자 포함)의 노동시장 통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사업주의 취약계층 채용·선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 사업주 및 구직자(재직자 포함)에 대해 구인·구직 정보제공, 취업 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외 재정을 지원받는 기구에 의한 고객센터 포함

④ 고용장려금

- 구직자 등의 채용 촉진, 실직위험이 있는 자의 계속고용 지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자금 보조 사업
 - (고용창출(채용)장려금) 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구직자 등 목표 집단의 신규 채용을 촉진
 - (고용유지장려금) 구조조정 등 경제적 이유로 위험 상황에 처한 재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출산, 육아 등 생애 주기상의 변화나, 저소득 등으로 고용 불안을 경험하거나 할 수 있는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⑤ 창업지원

- 직접적인 지원(현금) 또는 간접적인 지원(창업자금대부, 시설제공, 경영 조언 등)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⑥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체당금 지급 등 공적자금으로 실직자의 임금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

참고 6

주요 일자리사업 담당자 연락처 현황

연번	사업명	부처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1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한국형실업부조도입추진단)	백석현 (044-202-7381)
2	취업성공패키지지원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원빈 (044-202-7375)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고용부 (공정채용기반과)	용다솜 (044-202-7493)
4	직업안정기관운영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과)	문세원 (044-202-7331)
5	일터혁신컨설팅지원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	기만철 (044-202-7635)
6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과)	남민우 (044-202-6327)
7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	과기부 (미래인재양성과)	구서희 (044-202-4833)
8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하이테크과정)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과)	정상희 (044-202-7274)
9	나노종합기술원 지원(R&D) (나노전문인력양성)	과기부 (연구개발정책과)	김태완 (044-202-4577)
10	(가칭)평생내일배움카드	고용부 (인적자원개발과)	최승훈 (044-202-7316)
11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부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044-202-7438)
1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부 (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044-202-7416)
13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	강나래 (044-202-7477)

연번	사업명	부처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14	장년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진진희 (044-202-7460)
15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여승연 (044-202-7459)
16	장애인직업능력 개발	고용부 (장애인고용과)	김인철 (044-202-7484)
17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부 (장애인고용과)	김인철 (044-202-7484)
18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고용위기선제대응패키지)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오인권 (044-202-7410)
19	구직급여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
20	실업크레딧지원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병성 (044-202-7370)
21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	허진영 (044-202-7406)
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복지부 (노인지원과)	박소영 (044-202-3477)
23	자활근로사업	복지부 (자립지원과)	이지연 (044-202-3080)
24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이한석 (044-202-3328)
25	창업성공패키지	중기부 (창업촉진과)	임제학 (042-481-4523)
26	사회적기업진흥원운영 (청년등사회적기업가육성)	고용부 (사회적기업과)	정누리 (044-202-7430)
27	창업사업화지원	중기부 (창업촉진과)	이효종 (042-481-1688)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나선다.

- 세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고용노동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 발표 -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중소기업 혁신역량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에 손을 맞잡았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9월 4일(수) 오전 11시에 프레스센터(외신 기자클럽)에서 “대·중소기업 간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 완화에 서로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단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하청 간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도입되었고,
 -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복지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함께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 * (재정지원) ▲ 조성한 기금의 50%,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계 2억 원 한도
▲ 대기업(원청)으로부터 출연 받을 경우 출연금의 50%, 매년 2억 원 한도

- * (세제지원) ▲기업의 출연금은 법인세 손비인정
 ▲기금법인이 출연 받은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등

□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2018년부터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 올해부터는 혁신성장 요소를 가미한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이하 ‘임금격차 해소운동’)으로 이를 지속·확산시키고 있다.
- 임금격차 해소운동은 기업들이 해당 기업의 규모와 업종 등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선택하여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복리후생 지원, 생산성 향상으로 임금지불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화를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솔루션 구축, 자동화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이내)

- 또한, 중소기업 임금·복지 수준 향상 및 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성과공유 제도를 운영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우대, 정책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임금격차 해소 운동」,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이 궁극적으로 임금·복지의 양극화 해소를 공통분모로 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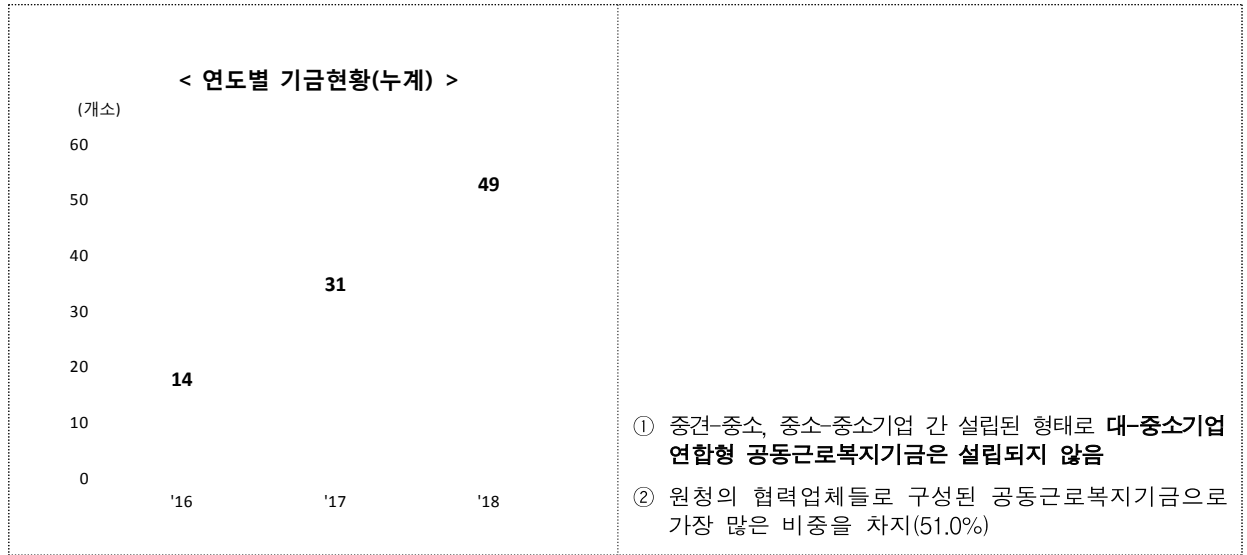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 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것도 상생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설립·운영 과정의 규제 혁신, 재정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 또한, 협력 중소기업의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근로의 질과 기업의 성과(생산성·품질수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하였다.
-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복지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 이에 더해,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홍보하고 안내하기로 하였다.
-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임금격차 해소 운동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 대책」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2016년 1월,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도입 이래, 가입·탈퇴의 엄격한 제한 등 제도의 경직성, 설립·운영 과정의 전문적 컨설팅 부족, 재정지원 부족 등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 미진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다.
-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연간 63.3개 설립,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연간 16.3개 설립
 ↳ 1992~2017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645개 설립된 반면, 2016~2018년 공동근로복지기금은 49개 설립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현황] (2018년말 기준)

(단위: 개소)

계	설립 연도별			형태별					
	2016	2017	2018	원·하청①	협력업체②	동종업종	지역	계열사	가족회사
49	14	17	18	5	25	9	1	6	3



-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던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대폭 개선하고, 재정지원 확대, 설립·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전문가가 참가한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도 혁신을 통한 설립 촉진

- 우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90%까지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90%까지 사용한도가 확대된다.
 - 이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현재 세대의 복지비용 지출 요구에 부응하여 복지사업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 앞으로는 설립되어 운영 중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 * 중간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자율성 보장
 -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 그간 중간 참여, 탈퇴 및 탈퇴 시 재산처리 방법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 또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개별 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 * 체불임금 등을 우선 지급하고 남은 재산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
 - 지금까지는 특정기업만의 사업 폐지 시 출연금을 회수·사용할 수 없어 해당기업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 사택은 '근로복지시설'임에도 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기금 법인은 사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수 없었다.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의한 사택으로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2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이 강화된다.
- 지금까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사업장의 수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이 조성한 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설립일로부터 3년간 누적 2억 원까지 지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참여 사업장의 수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 *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규모(참여 사업장 수, 수혜 중소기업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 **30개소**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거나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5년간 20억 원**까지 지원
- 또한,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유도를 위해 산업단위 또는 지역단위에 기반을 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원기간 및 지원액이 더 늘어난다.
- * **50개소** 이상 사업장이 참여하고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 수가 **1,500명** 이상일 경우 **7년간 30억 원**까지 지원
- 아울러, 대기업의 상생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닌 협력 중소기업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액도 확대된다.

- 이 경우도 지원 규모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수나 수혜를 받는 근로자가 많을수록 확대된다.(최대 10억 원)
- 한편,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이 허용되며,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소 협력업체와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 * 해당 회사의 사업이 폐지될 경우 등에만 해산이 가능하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을 허용
- 또한 대기업(사업주)만이 아니라 대기업(원청)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이 경우 출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기업(원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적립된 기본재산) 사용 허용

3 설립 지원 인프라 확충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심 제고와 확산을 위해 새로운 “공동기금복지모델”도 창출한다.
-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노사단체 · 근로복지공단 · 산업단지공단 등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단지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경우 정부도 지자체 출연금의 100%까지 새롭게 지원한다.
- 또한, 민간영역에서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서부터 회계, 결산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실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방침이다.

-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을 목표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며,
 - 공동근로복지기금 가입·탈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전제로 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개별기업 사업폐지에 따른 재산처리 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연내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포용적 노동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임에도, 인식 부족과 제도 미비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 “최근 상위 20% 임금과 하위 20% 임금 격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 규모별·고용 형태별 복지격차 완화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 “중소 협력업체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일터혁신 지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핵심소재 등에 대한 대외의존 구조 탈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하였다.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활성화되면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 이를 위해 “일터혁신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여 임금·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일터혁신 지원은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좋은 모델이며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임금·복지격차 완화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붙임 >
1. 업무협약서
 2. 임금격차 해소운동 개요 및 현황
 3. 일터혁신 추진현황
 4. 공동근로복지기금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연계방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이강욱 사무관(☎044-202-7559), 노사협력정책과 기만철 사무관(☎044-202-7635),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배주형 사무관(☎042-481-1664), 동반성장위원회 김호영 팀장(☎02-368-84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규모 간 임금·복지 격차 완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대·중소기업 간, 그리고 중소기업 상호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및 활용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통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격차 완화를 기본 목적으로 한다. 이 협약은 또한 기업규모 간 격차 축소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공정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공장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통한 일터혁신 확산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각 협약당사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확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증진과 복지격차 완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특히, 지역 또는 산업 단위의 대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을 촉진한다.
2. 근로복지와 생산성 제고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스마트 공장의 도입과 확산, 근로자 참여형 일터혁신 사업의 확대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지불능력 확충을 함께 도모해 나간다.

3.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의 핵심요소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대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한다.

제3조(협약의 이행)

1. 협약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항을 협조한다.
2.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정기 또는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사항을 협의한다.

제4조(협약기간 및 효력) 이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각 기관 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으면 그 효력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된다.

제5조(협약의 해지 및 기타) 본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논의하여 결정하며, 본 협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존중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협력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며, 협약당사자의 대표자가 서명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9. 4.



고용노동부장관
이 재 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 영 선



동반성장위원장
권 기 홍



붙임 2

임금격차 해소운동 개요 및 현황

□ 시행 주체 : 동반성장위원회

□ 추진배경

-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동반성장위원회 중점사업으로 추진(제50차 동반위 의결 : 2018. 4. 17.)

* 2019년부터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으로 명칭 변경

□ 추진내용 : 대·중견기업-협력 중소기업-동반위 3자 협약 체결

① 참여 대기업·중견기업, 공기업

-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제값 쳐주기, 제때 주기, 상생결재로 주기) 준수

① 제값 쳐주기	■ 최저임금 인상 등 납품단가 인상 요인을 제대로 적기에 반영
② 제때 주기	■ 제반 대금을 법정기일 이전, 가급적 이른 시일에 지급
③ 상생결재로 주기	■ 현금 또는 상생결재시스템 활용

- 기업의 규모·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상생협력 모델” 자율 선택·시행

* ▲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 경영안정 금융지원

② **협력 중소기업** : 중소기업 간 거래(2차→3차)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 및 고용확대 노력 등

③ **동반성장위원회** : 협약 참여기업 확대 및 이행여부 점검, 참여 실적·성과 우수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인센티브 대정부 건의

□ 협약체결 기업 협약금액 : 총 8조 250억 원(3년간)

구분	협약금액	주요 내용
계	8조 250억 원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4,226억 원	인센티브, 기본급 인상분(임금공유), 복리후생 지원 등 협력사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직접 지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2조 1,446억 원	납품단가 반영, 공동R&D, 생산성 향상 지원 등 협력사의 지급능력 제고를 위한 간접 지원
경영안정금융 지원	5조 4,578억 원	직접, 시중은행과 공동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 협력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저리 대출

□ 임금격차 해소운동 참여기업 현황 : 총 27개사 (2019년 8월말 기준)

순번	기업명	협약일	협약 금액(3년)			
			총 액	① 임금 및 복리후생	② 임금지불 능력제고	③ 경영안정 금융
제1호	이랜드리테일	'18.5.16	750억원	215억원	35억원	500억원
제2호	한국남동발전	'18.6.28	615억원	50억원	365억원	200억원
제3호	한국중부발전	'18.8.31	450억원	19억원	231억원	200억원
제4~11호	동반위 8개 위원사*	'18.10.10	6조 2,116억원	3,463억원	1조 7,175억원	4조 1,478억원
제12호	한국동서발전	'18.10.25	1,150억원	58억원	792억원	300억원
제13호	대상	'18.11.16	405억원	10억원	65억원	330억원
제14호	KT	'18.11.20	1,169억원	-	169억원	1,000억원
제15~18호	포스코그룹**	'18.11.30	1,621억원	119억원	962억원	540억원
제19호	한국수력원자력	'18.12.13	1,880억원	4억원	376억원	1,500억원
제20호	LG전자	'18.12.18	3,269억원	18억원	51억원	3,200억원
제21호	토지주택공사***	'18.12.26	2,969억원	125억원	244억원	2,600억원
제22호	한국항공우주산업	'19.2.28	1,012억원	58억원	24억원	930억원
제23호	CJ ENM	'19.3.28	834억원	34억원	200억원	600억원
제24호	두산	'19.4.17	400억원	48억원	52.5억원	300억원
제25호	한국서부발전	'19.4.25	988억원	4.5억원	483억원	500억원
제26호	한국국토정보공사	'19.5.16	408억원	-	208억원	200억원
제27호	웅진코웨이	'19.6.18	214억원	0.15억원	14억원	200억원
합 계			8조 250억원	4,226억원	2조 1,446억원	5조 4,578억원

* 롯데백화점,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GS리테일, LG화학, SK하이닉스

** 포스코(추가 확대), 포스코건설, 포스코캠텍,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 토지주택공사 확대협약(2019.7.16) 금액 84억 원 포함

□ 일터혁신 의미 및 필요성

- 「일터혁신」이란, 협력적 노사관계와 근로자 참여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조직적인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혁신활동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참여 하에 숙련자의 암묵지를 체계화하는 숙련 향상, 낭비요소 제거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
 - 특히 노동시간 단축, 스마트공장 도입(디지털화) 등 노동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

* (현장의견) “스마트공장 도입과 함께 공정개선·인사시스템 개편 등 일터혁신 지원 효과적” <스마트 공장 도입 중소기업 현장방문, 2019.5.17>

□ 일터혁신 컨설팅 수행 현황

- (수행방식) 기업의 필요에 맞춰 ①기업 실태진단, ②진단유형별 맞춤형 제도설계, ③이행방안 마련 등 솔루션을 제공
- 2019년 근로시간단축, 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개발 3개 영역, 총 1,190건 지원
 - * △근로시간단축: 장시간 근로개선, 장년고용안정체계 구축, 고용문화개선 등
 - △인적자원관리(HRM): 임금체계·평가체계 개선, 노사파트너십 구축,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
 - △인적자원개발(HRD): 작업조직 및 작업환경 개선, 평생학습체계 구축 등
- 2020년 2,200건 및 컨설팅 내실화를 통한 일터혁신 우수사례 마련·확산

□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운동 (동반성장위원회) 연계

- 대기업을 협력중소기업 임금지불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내용 중 “생산성 향상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생산성 향상 지원”에 협력중소기업의 일터혁신 지원을 포함·연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붙임 4

공동기금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연계방안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사업목적)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내용)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입 지원(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지원)

* 신규구축(1억 원 이내), 고도화 지원(기초 1억 원 이내, 중간 1 이상 1.5억 원 이내)

- (우대사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총 5점 중 3점)

□ 성과공유 제도 : 성과공유형 기업 지정 및 혜택 부여

- (사업목적)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복지수준 향상 및 인적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람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 중소기업 확산
- (지원대상)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사업주-근로자간 협약한 기업이 성과공유기업으로 신청하면 지정

* 성과급 지급기업(우리사주 포함), 성과보상공제사업 가입 기업(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 운영기업, 스톡옵션 운영 기업 등

- (지원내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일자리평가 항목에 최대 30점(100점 만점) 반영, 중진공 정책자금(창업기업지원자금) 신청자격 부여 등

□ 중소기업 계약학과 : 부담금 납부주체 확대로 기업 부담 완화

- (사업목적) 先취업-後진학 기반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재직 유도
- (지원내용) 학생은 등록금*, 대학에 학과 운영경비 지원

* (재교육형) 전문학사·학사 85%, 석·박사 65%, (채용조건형) 전액

- (지원조건) 대학-기업-근로자(학생) 간 계약 체결 후 대학은 학위과정 이행, 학생은 대학 학위과정 수료 후 일정기간 해당기업에서 의무근무

- (우대사항) 등록금의 민간 부담금 납부주체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인력 양성 및 장기재직 유도

□ 정책자금 : 융자한도 확대 및 기술사업성 평가 시 우대사항 반영 추진

- (사업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 (지원내용) 개별기업당 60억 원 이내 융자 가능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기업은 70억 원)

* 혁신형 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은 최대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

- (지원조건)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여 융자 여부 결정

* 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 기준으로 운영

- (우대사항) ①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에 대해 개별기업 융자한도 확대(60억 원→100억 원) ②기술사업성 평가 시 고용창출 평가항목(고용의 질적 수준 등) 우대사항 반영

* 2020년도 정책자금 공고 및 기술사업성 평가지표 개선 시 반영 추진

□ 기술보증 : 공동기금 참여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실시

- (사업목적) 담보는 부족하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히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

- (지원대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우대사항) 대상기업을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신규 분류하여 보증 비율 상향(85%→90%) 및 보증료감면(0.3%p) 우대

- 대상기업 중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 지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추가 감면(0.2%p)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월평균임금 기준금액 이상 수령 인원 80% 이상

산업계가 주도하는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 사업 9월부터 추진

- ❖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 기업을 업종별로 묶어 훈련과정 지원
- ❖ 학습근로자의 직무 수행능력에 대한 산업계 통용 인증서 발급
- ❖ 산업계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비중 축소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산업계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 사업을 9월부터 추진한다.
- 일학습병행은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가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고 일정 기간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외부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독일, 스위스 등은 오랜 도제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청년 실업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일학습병행(dual system)을 강조하고 있다.
 - 2014년 시범 사업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일학습병행제도는 2019년 6월 현재 1만4천6백여 개의 기업과 8만 5천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빠르게 퍼지고 있다.
 - 참여자 중 청년(15~34세) 세대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중소기업의 인력 수요·공급 불일치를 없애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이번에 도입되는 시범사업은 산업계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사업주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업종별 참여기업들과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하게 된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참여기업의 훈련과정을 1년간 지원하며 훈련과정을 마친 학습근로자를 평가하여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직무인증서를 발급한다.
 -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현장훈련(OJT)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기존의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에게 지급된 현장훈련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다.

- 다만 외부 학교 또는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의 훈련 (Off-JT)은 이전과 같이 훈련비가 지급된다.
-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지원금은 기존보다 줄어든다.

- 시범 사업 참여기업은 기업현장교사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어야 하나 50인 미만 기업도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 학습근로자는 훈련 실시일을 기준으로 입사 1년 이내의 재직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은 산업계가 현장에 필요한 훈련을 스스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면서 “국가 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정부 주도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기준을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02-6050-3929, 02-6050-3933)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누리집(<http://www.korchamhrd.net>)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정책과 이현주 사무관(☎044-202-72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훈련과정 편성 기준>

훈련기준	기존 일학습병행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상의)
NCS활용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형) 필수 능력 단위 100% 활용 ▪ (기업형) 전체 훈련 시간 50% 이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를 활용하되, 기업 직무에 맞게 탄력 적용
총 훈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고정)
연간 훈련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형) 200시간 이상 ▪ (기업형)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없음
최소 훈련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2 400시간 ▪ L3 600시간 ▪ L4~L5 80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h
OJT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형 25~75% ▪ 기업형 5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80%
OFF-JT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형 25~75% ▪ 기업형 2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
OJT 제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6h, 1월 60h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 없음
자격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CS기반 자격 ▪ 과정평가형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단체 명의의 직무 인증서 발급

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 **[개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설(16.7월)
 -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 *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 가입 가능(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
- **[지원방식]**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기업은 2년 500만원 또는 3년 75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

- **[중도해지]**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
 - (본인 납입분)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환급**(해지사유 무관, 2, 3년형 동일)
 - (기업 기여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정부 환수**(“)
 - (정부 지원금)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
(2년형은 50%, 3년형은 30% 수준)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총 4개소)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운영기관명(대표전화)
(주)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02-2006-9583)	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02-3399-7651)
인크루트알바콜(주)서울북부지사(02-2186-9059)	(사)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02-6959-5570)

2019 기업지원제도 안내

1. 일자리안정자금

- ❖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월보수액 210만원 이하의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하고 있는 경우,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3만원(5인미만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

구 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지원대상 사업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예외로 지원) ①공동주택 경비·청소,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활동지원기관·자활기업·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②300인 미만 사업장 55세 이상 고령자 ③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 지원제외: ①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초과), ②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국가 및 공공기관, ④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 등), ⑤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⑥안정자금 지원기간 동안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고용보험 상실코드 23번)으로 퇴직시킨 사업주
지원가능 근로자 (지원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일·숙직비,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한도), 월10만원 이하의 식대·경조사금액·자녀보육수당, 단순노무직이 받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240만원 한도) • 고용보험 가입 및 1개월 이상 고용유지(단,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무) • 월평균보수 최저임금 이상, 기존근로자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 지원제외: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5만원 지원)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신청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18년 계속 지원 사업장 ⇒ 최저임금 준수확인서 제출(별도 신규신청 절차 없음) * 일반사업장은 '19.2.28까지, 공동주택은 '19.1.31까지 제출 ②'19년도 최초로 신청한 사업장 ⇒ 연 1회 신청('19.1.1~12.13)으로 연간 자동 지급 • 고용보험 기성립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안정자금 신청 체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 고용보험 신규성립 : 고용보험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안정자금 신청 체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 두루누리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희망서(두루누리 사업장용) ☞ 근로자 추가 신고: (입사)취득신고서에 안정자금 희망여부만 체크, (퇴사)상실신고내역 자동 반영
신청방법 ·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신청)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 (오프라인신청)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 방문·우편·팩스 • (지급방법)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지급시기) 월 1회 지급(매월 15일)
신청문의	<p>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http://jobfunds.or.kr</p>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꼭 알아야 할 사항!



0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와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시작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02. 누가 혜택을 받나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임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50%까지 국가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대상자 : 해당사업장 직원 수만 10명 이하로, 월평균임수가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 10명 이하 사업주, * 10명 이하 사업장 사회보험료 부담

신청대상 : 신규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 10명 이하 사업주, * 10명 이하 사업장

03. 어떻게 지원받나요?

사업주가 운영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에서 해당 월도 고용보험료를 정액납부기간까지 편입하면 그 다음 달 분할로써 해당 월도 보험료 지원금을 받 내지지 금액을 고지하는 행위로 지원됩니다.

Tip 내 일하는 사회보험 가입여부! 이렇게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기업사업장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사회보험료 가입 신고센터
 * 인터넷가입 홈페이지 (www.kcmr.or.kr)
- 국민연금 가입지점·신고센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어떻게 받으세요?



01. 신청방법

- 온라인 : 4대사회보험료지원센터(www.4insure.or.kr) 신청서할 업
- 서면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접수(영문·우편·팩스 등)

02. 적용서류

- 신규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
 * 신청서(사업장 해당신고서)모집제(영문)신고서
- 기존 보험가입 사업장의 경우
 *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03. 신청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로 문의하면 방문하여 사회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콜 센터 1588-9075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취재임을 진심에 따른 '건강비 부담' 일자의 안정자금 을 신청하세요.

보험사건 고충상담지원센터
 월평균임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 1명당
 월사후 50만원(기업 지원 사업장은 100만원) 지급

- 문의 : 4대 사회보험료 관련 고충은 모두 국가(노동부)를 통해까지
- 서면 : 4대 사회보험공단·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상담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9075)

급여청에 **일자의 안정자금** 을 신청해보세요.

3. 기업지원 사업

○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 * 주요지원내용 붙임 참고

1	고용창출장려금	①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심사형, 요건형), ②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심사형), ③국내복귀 기업 지원(심사형), ④신증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심사형), ⑤고용촉진장려금지원, ⑥청년추가고용장려금
2	고용안정장려금	①정규직 전환지원(심사형), ②시간선택제 전환지원, ③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심사형), ④출산·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3	고용유지지원금	①고용유지지원금, ②무급 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4	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	①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②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중복지원 사업 대상

양 장려금	중복 시	지원 비율
일자리 함께하기 (100% 지급)	고용창출장려금	+ 70% 추가지원
	고용안정장려금	+ 100% 추가지원

○ 문의전화: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02-2171~1800~5, 1833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8층)

●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 검색

○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내용
고창 장려금 출 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공모형) 교대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1~2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 40만원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100만원, 1~3년 지원 -임금감소액보전: 월 최대40만원, 1~3년 지원(사업주 보전임금의 80%한도)
	시간선택제 신규 고용 지원	· 근무체계 개편,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기업규모 관계없이 월 6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10만원
	국내 복귀 기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신중년 적합 직무고용지원	·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정규직 전환지원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증가 보전금: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 월 30만원
고안 장려금 정 금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임금감소 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주당 5~10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원 한도(기업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 육아휴직등 부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 대체인력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해당 근로자 1인당] -대체인력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 육아휴직 월30만원(대규모기업 제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대규모기업 10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지원사항 별도 문의
고유 지 지 원 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휴직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 지원사항 별도 문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을 한도로 3년간 임금을 지원
장년· 고령자 고 용 지 원 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장년 미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 [지원수준]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27만원을 근로자수의 20%까지(대규모 기업 10%) 한도, 다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18년도 24만원)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 18개월 이상 근무한 만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임금이 감소된 경우 [지원수준] 근로자: 감액금액의 1/2, 연간 1,080만원 한도(최대 2년), 사업주: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간접 노무비 지원(최대 2년)